

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

(제11조제2항제2호관련)

위험공실의 구분			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	
화약류(꽃 불류·신호 용염관·신 호용화전과 이들의 원 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외한다) 의 위험공 실	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	정체량 300킬로 그램 초과 의 경우	두께 50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	
		정체량 100킬로 그램 초과 300 킬로그램 이하 의 경우	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	
		정체량 4킬로그 램 초과 100킬 로그램 이하 의 경우	두께 20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	
		정체량 4킬로그 램 이하의 경우	두께 15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	
불이 날 위 험있는 위 험공실	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	정체량 600킬로 그램 초과 의 경우	두께 20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	
		정체량 600킬로 그램 이하 의 경우	두께 15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	
꽃불류등의 위험공실	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	정체량 30킬로그 램 초과 의 경우	두께 15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	
		정체량 30킬로 그램 이하 의 경우	두께 10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 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	
	불이 날 위 험있는 위 험공실		두께 12센티미터 이상 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, 두께 10센티미터 이상 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	